|  |  |  |
| --- | --- | --- |
|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관련 감독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94호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사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상품 검사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법규와 <상무부•발전개혁위•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시장감독관리총국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업무 보완에 관한 통지>(상재발[2018]486호) 등 국가의 유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관련 정책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의 감독관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적용 범위 2.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소비자(구매자)가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소매 수출입 상품 거래를 하고 세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거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이 공고에 따라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3. 기업 관리 4.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물류기업, 결제기업 등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은 세관 통관기업 등록•등기 관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 소재지 세관에서 등록•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외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은 국내 대리인(이하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국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당 대리인 소재지의 세관에서 등록•득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기업 등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재지 세관에서 정보 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통관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재지 세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물류기업은 국가 우정(郵政)관리부서로부터 <택배 사업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 직구매 수입 거래에 참여하는 물류기업은 우정(郵政)기업이거나 세관에서 통관대행 등기 수속을 이행한 국제 택배 사업 운영업체이어야 한다.  결제기업이 은행기구인 경우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금융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결제기업이 비(非)은행기구인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발급한 <결제 사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결제 사업의 범위에 ‘인터넷 결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세관에서 등록•등기 절차를 이행한 기업은 세관신용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 세관이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차별화 된 통관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2. 통관 관리 3. 다국적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매 수입 상품과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감독관리 방식 코드 1210) 수입 정책을 적용받는 상품은 개인이 자기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상품최초수입허가 비준문서, 등록 또는 비안(備案) 관련 요구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단, 관련 부서의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수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유행지역의 상품과 중대 품질 안전 리스크가 발생한 상품에 대하여 리스크 긴급대응을 가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A’(감독관리 방식 코드 1239) 수입 정책을 적용받는 상품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2018년 버전)> 미주(尾注)의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1. 세관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및 그 용기, 포장물에 대하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2.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을 신고하기 전에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 결제기업, 물류기업은 각각 국제무역 ‘단일 창구’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대금 지급, 물류 등 전자정보를 세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 직구매의 경우 우정(郵政)기업, 국제 택배 사업 운영업체가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 결제기업의 위탁을 받아 상응하는 법률책임의 부담을 승낙하는 전제하에서 세관에 거래, 대금 지급 등 전자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상품을 신고하기 전에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 물류기업은 각각 국제무역 ‘단일 창구’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세관에 거래, 대금 수취, 물류 등 전자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 또는 그가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신고 리스트>(이하 ‘<신고 리스트>’로 약칭)를 제출하여 ‘리스트 대조검사 후 통관 허가(清单核放)’ 방식으로 세관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여 ‘리스트 대조검사 후 통관 허가, 총괄신고(清单核放、汇总统计)’ 방식으로 세관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고 리스트>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상기 제(6)호~제(8)호의 요구에 따라 전송하거나 제출하는 전자정보에는 전자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를 전개하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은 거래의 진실성과 소비자(구매자) 신분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분정보가 국가 주관부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분정보일 경우 구매자와 대금지급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2.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상품 수출 후,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은 매월 15일까지(당월 15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법정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번째 근무일까지로 연장) 직전월에 통관 수속이 이뤄진 <신고 리스트>를 표 헤더 부분의 동일 송수화인, 동일 운송방식, 동일 생산•판매업체, 동일 운송 목적지국, 동일 수출신고세관 및 표 중심 부분의 동일 최종목적지국, 동일 품목분류 코드(10자리 숫자), 동일 화폐 종류의 규칙에 따라 취합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리스트 대조검사 후 통관 허가, 총괄신고(清单核放、汇总统计)’ 방식의 세관신고 수속이 허용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 입화물 신고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리스트>의 수정 또는 취소는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 수정•취소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리스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는 페이퍼리스 통관 작업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조세 징수 관리 2. 다국적 전자상겅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세관은 국가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에 따라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소비세를 징수한다.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되 소매가격,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3.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소비자(구매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세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물류기업 또는 신고기업은 원청징수의무자로서 납세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상응하는 세금 보충납부 의무와 관련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품목명칭, 사양•모델, HS코드, 실제 거래가격 및 관련 비용 등 조세 징수 관리 요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신고 시 위안화를 표시통화로 한다.   1. 세관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품목 분류, 과세가격 등을 심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유관 규정에 따른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세관은 감독관리 규정에 부합하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기간별 일괄납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거하여 액수가 충분하고 유효한 세금담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통관 허가 후 30일 내에 반품 또는 주문 취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통관 허가 후 제31일부터 제45일까지의 기간 내에 세관에서 납세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소 관리 2.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감독관리 작업장소는 반드시 세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작업장소 경영인, 저장기업은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전자 데이터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다국적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매 수입 또는 일반 수출 업무를 전개하는 감독관리 작업장소는 택배형 또는 우체국배송형 세관 감독관리 작업장소 규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다국적 전자상거래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업무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B형) 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고의 규정을 참조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4. 검역•검사 및 물류 관리 5. 입국항에서 검역 및 검역처리 실시가 필요한 경우 검역 및 검역처리 완료 후 다국적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작업장소로 운송이 가능하다. 6.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업무 : 1선 세관에서 보세구 내로 반입 시 세관신고서 방식으로 신고하며 세관은 영상감시, 온라인 확인검사, 현장순찰, 재고조사 등 방식으로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상품에 대한 현물 감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7.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 다국적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작업장소 경영인, 저장기업은 세관이 실시하는 확인검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8.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모델로 이전통관(轉關)할 수 있다. 그중에서,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소재지 세관은 이전통관(轉關) 상품의 품목명칭을 통합운송장(總運單) 형태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상품 1회분’을 입력하고 상세한 이전통관(轉關) 상품 전자 리스트를 첨부할 수 있다. 9.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상품은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B형) 내에서 유통이 가능하되 유관 규정에 따라 유통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감독관리 방식 코드 1210)의 세관 감독관리 방식으로 국내로 반입된 상품을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A’(감독관리 방식 코드 1239)를 적용받는 도시로 전입하여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를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 상품은 동일 구역(센터) 내 기업 사이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10. 반품 관리 11.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경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 또는 그가 위탁한 통관대행업체의 반품 신청을 허용한다. 반품된 상품은 2차 판매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통관일로부터 30일 내에 원 상태로 원 감독관리 작업장소로 반송되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개인의 연간 누계 거래액은 상응하게 조정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의 경우, 반품된 상품은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1. 품질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 경과, 상품 또는 포장 파손, 중국의 유관 감독관리 정책에 저촉 등 국내에서 판매하기에 부적합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과 세관이 반송을 명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은 유관 규정에 따라 해외로 반송하거나 소각처리한다. 2. 기타 사항 3.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진실된 업무 관련 전자 데이터와 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실시간 물류 추적 등 정보공유 인터페이스를 오픈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의 리스크 예방•통제 업무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지원을 강화하고 세관이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및 그 대리인,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상품 품질안전 등 리스크 예방•통제 매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상품 품질안전 및 허위거래, 2차판매 등 비정상적 거래 행위를 감시•통제하고 상응하는 처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은 출입국항의 공공위생안전, 생물안전, 수출입 식품•상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및 기타 금지•제한 상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품 출처 추적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품질안전 주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수출입 상품 안전 자율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격려한다.  소비자(구매자)는 그가 구매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을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세관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품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관련 기업에게 불합격 상품 또는 품질안전 문제 상품에 대한 리스크 저감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관련 경영주체의 책임의 추궁한다. 모니터링에서 품질안전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 발견된 경우 리스크 경보를 발령하고 상응하는 관리•통제 조치를 취한다. 세관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상품 판매 전에 법률•법규에 따라 필요한 검역을 실시하며 검역 상황에 따라 리스크 경보를 발령한다. 2.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 물류기업, 다국적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작업장소 경영인, 저장기업은 규정위반 또는 밀수 혐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주동적으로 세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3. 밀수 또는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 위반 혐의에 연루된 다국적 전자상거래 참여 기업은 세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래•생산 데이터 또는 원시기록 데이터를 오픈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 공고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적인 거래, 결제, 물류‘3 서류(三單, 주문서류•결제서류•운송장을 뜻함)’ 정보의 조작 또는 전송에 참여하거나 2차 판매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구매자) 신분정보에 대한 진실성 심사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정보 또는 연간 구매한도액을 도용당하거나 2차 판매가 이뤄지거나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밀수 또는 규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하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타 공민의 신분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관이 밀수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며 공민 정보의 불법적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밀수 혐의가 없는 규정 위반 행위를 행하였고 최초로 발각된 경우 면담을 실시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시정 명령을 내린다. 재차 발각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를 금지시키고 기타 업계 주관부서로 인계하여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하도록 한다.   1. 세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및 그의 국내 대리인,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결제기업, 물류기업 등은 세관의 계사(稽査)•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이 공고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이라 함은, 해외에서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등록기업(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 내에 등록한 기업은 제외) 또는 국내에서 해외 소비자를 상대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지칭하며 상품의 화물 권리 소유자이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라 함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를 전개하는 해외등록기업이 위탁한 국내 대리업체를 지칭하며 그가 세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이행하고 성실신고 책임을 부담하며 법에 따라 관련 부서의 감독관리를 받고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공상등기가 이뤄진 기업으로 거래 쌍방(소비자와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하여 웹 스페이스, 사이버 경영장소, 거래규칙, 정보 발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쌍방의 독립적인 거래 활동에 제공되는 정보망 시스템을 구축한 경영자를 지칭한다.  ‘결제기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공상등기가 이뤄진 기업으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그를 위하여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비(非)은행 결제기구 및 유니온 페이(銀聯) 등을 지칭한다.  ‘물류기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공상등기가 이뤄진 기업으로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그를 위하여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소비자(구매자)’라 함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국내 구매자를 지칭한다.  ‘국제무역 ‘단일 창구’’라 함은, 국무원출입국항업무부서간연석회의의 총괄적인 계획 및 추진하에 전자 출입국항 공공 플랫폼에 의탁하여 구축된 원 스톱 무역 서비스 플랫폼을 지칭한다. 신고인(다국적 전자상거래 참여 기업 포함)은 ‘단일 창구’를 통하여 세관 등 출입국항 관리 관련부서에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출입국항 관리 관련부서는 전자 출입국항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직능 관리를 실시하며 ‘단일 창구’를 통하여 법 집행 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이라 함은, 전자 출입국항을 기반으로 구축한 기업, 세관 및 관련 관리부서간의 데이터 교환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을 지칭한다.  ‘인터넷 구매 보세 수입’(감독관리 방식 코드 1210) 수입 정책 적용 도시 :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다롄(大連),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청두(成都), 수저우(蘇州), 허페이(合肥), 푸저우(福州), 정저우(鄭州), 핑탄(平潭), 베이징(北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선양(沈暘),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난징(南京), 난창(南昌), 우한(武漢), 창사(長沙), 난닝(南寧), 하이커우(海口), 구이양(貴暘), 쿤밍(昆明), 시안(西安), 란저우(蘭州), 샤먼(厦門), 탕산(唐山), 우시(武錫), 웨이하이(威海), 주하이(珠海), 둥관(東莞), 이우(義烏) 등 37개 도시(지역).   1.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기간은 세관이 <신고 리스트> 신고를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공고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2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내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이 이미 체결한 계약의 경우, 그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업무의 전개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8년 12월 10일 |  |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  **有关监管事宜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8年第194号  为做好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监管工作，促进跨境电子商务健康有序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等法律法规和《商务部 发展改革委 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商财发〔2018〕486号）等国家有关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相关政策规定，现就海关监管事宜公告如下：  　　一、适用范围  （一）跨境电子商务企业、消费者（订购人）通过跨境电子商务交易平台实现零售进出口商品交易，并根据海关要求传输相关交易电子数据的，按照本公告接受海关监管。  　　二、企业管理  　　（二）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物流企业、支付企业等参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业务的企业，应当依据海关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相关规定，向所在地海关办理注册登记；境外跨境电子商务企业应委托境内代理人（以下称跨境电子商务企业境内代理人）向该代理人所在地海关办理注册登记。  　　跨境电子商务企业、物流企业等参与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业务的企业，应当向所在地海关办理信息登记；如需办理报关业务, 向所在地海关办理注册登记。  　　物流企业应获得国家邮政管理部门颁发的《快递业务经营许可证》。直购进口模式下，物流企业应为邮政企业或者已向海关办理代理报关登记手续的进出境快件运营人。  　　支付企业为银行机构的，应具备银保监会或者原银监会颁发的《金融许可证》；支付企业为非银行支付机构的，应具备中国人民银行颁发的《支付业务许可证》，支付业务范围应当包括“互联网支付”。  （三）参与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业务并在海关注册登记的企业，纳入海关信用管理，海关根据信用等级实施差异化的通关管理措施。  　　三、通关管理  　　（四）对跨境电子商务直购进口商品及适用“网购保税进口”（监管方式代码1210）进口政策的商品，按照个人自用进境物品监管，不执行有关商品首次进口许可批件、注册或备案要求。但对相关部门明令暂停进口的疫区商品和对出现重大质量安全风险的商品启动风险应急处置时除外。  　　适用“网购保税进口A”（监管方式代码1239）进口政策的商品，按《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2018版）》尾注中的监管要求执行。  　　（五）海关对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及其装载容器、包装物按照相关法律法规实施检疫，并根据相关规定实施必要的监管措施。  　　（六）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申报前，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或跨境电子商务企业境内代理人、支付企业、物流企业应当分别通过国际贸易“单一窗口”或跨境电子商务通关服务平台向海关传输交易、支付、物流等电子信息，并对数据真实性承担相应责任。  　　直购进口模式下，邮政企业、进出境快件运营人可以接受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或跨境电子商务企业境内代理人、支付企业的委托，在承诺承担相应法律责任的前提下，向海关传输交易、支付等电子信息。  　　（七）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商品申报前，跨境电子商务企业或其代理人、物流企业应当分别通过国际贸易“单一窗口”或跨境电子商务通关服务平台向海关传输交易、收款、物流等电子信息，并对数据真实性承担相应法律责任。  　　（八）跨境电子商务零售商品进口时，跨境电子商务企业境内代理人或其委托的报关企业应提交《中华人民共和国海关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申报清单》（以下简称《申报清单》），采取“清单核放”方式办理报关手续。  　　跨境电子商务零售商品出口时，跨境电子商务企业或其代理人应提交《申报清单》，采取“清单核放、汇总申报”方式办理报关手续；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内符合条件的跨境电子商务零售商品出口，可采取“清单核放、汇总统计”方式办理报关手续。  　　《申报清单》与《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具有同等法律效力。  　　按照上述第（六）至（八）条要求传输、提交的电子信息应施加电子签名。  　　（九）开展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业务的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跨境电子商务企业境内代理人应对交易真实性和消费者（订购人）身份信息真实性进行审核，并承担相应责任；身份信息未经国家主管部门或其授权的机构认证的，订购人与支付人应当为同一人。  　　（十）跨境电子商务零售商品出口后，跨境电子商务企业或其代理人应当于每月15日前（当月15日是法定节假日或者法定休息日的，顺延至其后的第一个工作日），将上月结关的《申报清单》依据清单表头同一收发货人、同一运输方式、同一生产销售单位、同一运抵国、同一出境关别，以及清单表体同一最终目的国、同一10位海关商品编码、同一币制的规则进行归并，汇总形成《中华人民共和国海关出口货物报关单》向海关申报。  　　允许以“清单核放、汇总统计”方式办理报关手续的，不再汇总形成《中华人民共和国海关出口货物报关单》。  　　（十一）《申报清单》的修改或者撤销，参照海关《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或者撤销有关规定办理。  除特殊情况外，《申报清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应当采取通关无纸化作业方式进行申报。  　　四、税收征管  　　（十二）对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海关按照国家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征收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完税价格为实际交易价格，包括商品零售价格、运费和保险费。  　　（十三）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消费者（订购人）为纳税义务人。在海关注册登记的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物流企业或申报企业作为税款的代收代缴义务人，代为履行纳税义务，并承担相应的补税义务及相关法律责任。  　　（十四）代收代缴义务人应当如实、准确向海关申报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的商品名称、规格型号、税则号列、实际交易价格及相关费用等税收征管要素。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的申报币制为人民币。  　　（十五）为审核确定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的归类、完税价格等，海关可以要求代收代缴义务人按照有关规定进行补充申报。  　　（十六）海关对符合监管规定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按时段汇总计征税款，代收代缴义务人应当依法向海关提交足额有效的税款担保。  海关放行后30日内未发生退货或修撤单的，代收代缴义务人在放行后第31日至第45日内向海关办理纳税手续。  　　五、场所管理  　　（十七）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监管作业场所必须符合海关相关规定。跨境电子商务监管作业场所经营人、仓储企业应当建立符合海关监管要求的计算机管理系统，并按照海关要求交换电子数据。其中开展跨境电子商务直购进口或一般出口业务的监管作业场所应按照快递类或者邮递类海关监管作业场所规范设置。  （十八）跨境电子商务网购保税进口业务应当在海关特殊监管区域或保税物流中心（B型）内开展。除另有规定外，参照本公告规定监管。  　　六、检疫、查验和物流管理  　　（十九）对需在进境口岸实施的检疫及检疫处理工作，应在完成后方可运至跨境电子商务监管作业场所。  　　（二十）网购保税进口业务：一线入区时以报关单方式进行申报，海关可以采取视频监控、联网核查、实地巡查、库存核对等方式加强对网购保税进口商品的实货监管。  　　（二十一）海关实施查验时，跨境电子商务企业或其代理人、跨境电子商务监管作业场所经营人、仓储企业应当按照有关规定提供便利，配合海关查验。  　　（二十二）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可采用“跨境电商”模式进行转关。其中，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所在地海关可将转关商品品名以总运单形式录入“跨境电子商务商品一批”，并需随附转关商品详细电子清单。  （二十三）网购保税进口商品可在海关特殊监管区域或保税物流中心（B型）间流转，按有关规定办理流转手续。以“网购保税进口”（监管方式代码1210）海关监管方式进境的商品，不得转入适用“网购保税进口A”（监管方式代码1239）的城市继续开展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业务。网购保税进口商品可在同一区域（中心）内的企业间进行流转。  　　七、退货管理  　　（二十四）在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模式下，允许跨境电子商务企业境内代理人或其委托的报关企业申请退货，退回的商品应当符合二次销售要求并在海关放行之日起30日内以原状运抵原监管作业场所，相应税款不予征收，并调整个人年度交易累计金额。  　　在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模式下，退回的商品按照有关规定办理有关手续。  （二十五）对超过保质期或有效期、商品或包装损毁、不符合我国有关监管政策等不适合境内销售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以及海关责令退运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按照有关规定退运出境或销毁。  　　八、其他事项  　　（二十六）从事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业务的企业应向海关实时传输真实的业务相关电子数据和电子信息，并开放物流实时跟踪等信息共享接口，加强对海关风险防控方面的信息和数据支持，配合海关进行有效管理。  　　跨境电子商务企业及其代理人、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应建立商品质量安全等风险防控机制，加强对商品质量安全以及虚假交易、二次销售等非正常交易行为的监控，并采取相应处置措施。  　　跨境电子商务企业不得进出口涉及危害口岸公共卫生安全、生物安全、进出口食品和商品安全、侵犯知识产权的商品以及其他禁限商品，同时应当建立健全商品溯源机制并承担质量安全主体责任。鼓励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建立并完善进出口商品安全自律监管体系。  　　消费者（订购人）对于已购买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不得再次销售。  　　（二十七）海关对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实施质量安全风险监测，责令相关企业对不合格或存在质量安全问题的商品采取风险消减措施，对尚未销售的按货物实施监管，并依法追究相关经营主体责任；对监测发现的质量安全高风险商品发布风险警示并采取相应管控措施。海关对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在商品销售前按照法律法规实施必要的检疫，并视情发布风险警示。  　　（二十八）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跨境电子商务企业或其代理人、物流企业、跨境电子商务监管作业场所经营人、仓储企业发现涉嫌违规或走私行为的，应当及时主动告知海关。  　　（二十九）涉嫌走私或违反海关监管规定的参与跨境电子商务业务的企业，应配合海关调查，开放交易生产数据或原始记录数据。  　　海关对违反本公告，参与制造或传输虚假交易、支付、物流“三单”信息、为二次销售提供便利、未尽责审核消费者（订购人）身份信息真实性等，导致出现个人身份信息或年度购买额度被盗用、进行二次销售及其他违反海关监管规定情况的企业依法进行处罚。对涉嫌走私或违规的，由海关依法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对利用其他公民身份信息非法从事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业务的，海关按走私违规处理，并按违法利用公民信息的有关法律规定移交相关部门处理。对不涉嫌走私违规、首次发现的，进行约谈或暂停业务责令整改；再次发现的，一定时期内不允许其从事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业务，并交由其他行业主管部门按规定实施查处。  　　（三十）在海关注册登记的跨境电子商务企业及其境内代理人、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支付企业、物流企业等应当接受海关稽核查。  　　（三十一）本公告有关用语的含义：  　　“跨境电子商务企业”是指自境外向境内消费者销售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的境外注册企业（不包括在海关特殊监管区域或保税物流中心内注册的企业），或者境内向境外消费者销售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商品的企业，为商品的货权所有人。  　　“跨境电子商务企业境内代理人”是指开展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业务的境外注册企业所委托的境内代理企业，由其在海关办理注册登记，承担如实申报责任，依法接受相关部门监管，并承担民事责任。  　　“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是指在境内办理工商登记，为交易双方（消费者和跨境电子商务企业）提供网页空间、虚拟经营场所、交易规则、信息发布等服务，设立供交易双方独立开展交易活动的信息网络系统的经营者。  　　“支付企业”是指在境内办理工商登记，接受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或跨境电子商务企业境内代理人委托为其提供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支付服务的银行、非银行支付机构以及银联等。  　　“物流企业”是指在境内办理工商登记，接受跨境电子商务平台企业、跨境电子商务企业或其代理人委托为其提供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物流服务的企业。  　　“消费者（订购人）”是指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的境内购买人。  　　“国际贸易‘单一窗口’”是指由国务院口岸工作部际联席会议统筹推进，依托电子口岸公共平台建设的一站式贸易服务平台。申报人（包括参与跨境电子商务的企业）通过“单一窗口”向海关等口岸管理相关部门一次性申报，口岸管理相关部门通过电子口岸平台共享信息数据、实施职能管理，将执法结果通过“单一窗口”反馈申报人。  　　“跨境电子商务通关服务平台”是指由电子口岸搭建，实现企业、海关以及相关管理部门之间数据交换与信息共享的平台。  　　适用“网购保税进口”（监管方式代码1210）进口政策的城市：天津、上海、重庆、大连、杭州、宁波、青岛、广州、深圳、成都、苏州、合肥、福州、郑州、平潭、北京、呼和浩特、沈阳、长春、哈尔滨、南京、南昌、武汉、长沙、南宁、海口、贵阳、昆明、西安、兰州、厦门、唐山、无锡、威海、珠海、东莞、义乌等37个城市（地区）。  　　（三十二）本公告自2019年1月1日起施行，施行时间以海关接受《申报清单》申报时间为准，未尽事宜按海关有关规定办理。海关总署公告2016年第26号同时废止。  境内跨境电子商务企业已签订销售合同的，其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业务的开展可延长至2019年3月31日。  　　特此公告。    　　海关总署  　　2018年12月10日 |